

[편그라운드 진건] 청소년운영위원회 회칙

제정 2023년 4월 30일

수정 2023년 8월 2일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회칙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편그라운드 진건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 의견을 시설 운영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법령 및 정관, 남양주도시공사의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청소년운영위원회

제3조(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에 따라 시설운영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운영 위원회를 설치하고, 세부 운영사항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장을 따른다.

제4조(목적) 위원회는 청소년운영위원회는 리더쉽을 발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편그라운드 진건에 대한 만족도 를 높이고, 청소년들의 참여의식 확대와 청소년이용시설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역할)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역할을 수행한다.

1.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참여와 모니터링 활동
2. 청소년의 권익과 인권의 신장에 관한 사항
3. 편그라운드 진건에 대한 만족도 및 의견 조사를 통한 지역사회 청소년 의견 전달
4. 청소년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활동 기획
5. 편그라운드 진건 운영 및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체적인 책임 역할 수행

제6조(자격) ① 위원회 자격은 남양주시 거주 또는 재학중인 9세 ~ 24세의 청소년으로 한다.

② 위원회 단원은 편그라운드 진건 내 자치기구 활동과 겸임이 되지 않으며, 매사에 솔선수범한 자세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활동을 우선 시 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① 남양주시 9 ~ 2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구성한다.

② 현 위원들 중 대표 청소년들과 담당 지도사의 선발 면접을 통해 구성한다.
③ 위원회 정원은 10명에서 20명 내외로 하며, 성별, 연령별로 다양하게 구성한다.
④ 위원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행사기획분과, 미디어홍보분과, 대외협력 분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8조(임기) 임기는 선발 후 해당연도 12월까지이며 연임이 가능하다.

제9조(위원의 해촉) ① 위원회 위원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 및 활동에 불참한 자
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자
3. 위원 본인이 탈퇴 의사를 전달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위원의 권리와 의무) ① 청소년에 관한 사업 및 시설 운영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지며, 그에 따른 의견반영 및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발언권 및 결의권을 가지며 위원의 모든 자치활동에 참여하고 정당한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재정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알 권리와 의견을 개진 할 권리를 가진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회의의 사업에 적극 참여할 의무를 갖는다
- ⑤ 위원회의 위원은 합법적 활동과 관련된 사항으로 어떤 불이익과 처분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⑥ 위원회의 위원은 사상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 ⑦ 위원회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에 불참할 수 없다.

제11조(임원) ① 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서기, 행사기획분과, 미디어홍보분과, 대외협력분과장을 각 1인을 둔다.

- ② 임원에 대한 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선거 당일 재적인원에 한하여 부여한다.
-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실무간사로 1인 이상을 둔다.

제12조(지위)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각 분과장은 각 분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며, 분과 회의시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내의 각 분과를 대표한다.
- ④ 각 분과의 단원들은 각 분과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적극적인 활동을 한다.

제13조(임원의 업무 및 권한) 위원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와 권한을 갖는다.

1. 위원회의 전반 사업을 검토, 조정, 심의, 의결한다.
2. 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3.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제14조(활동의 권한) 위원회의 활동 전반의 집행은 위원장이 맡는다. 단, 위원장이 결위 시 부위원장이 지위를 승계하며 부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위원장이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분과장이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15조(회의) 본 위원회의 회의에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둈다.

1. 정기회의 : 정기회의는 매월 둘째주 토요일 월 1회 실시하되 위원 간의 합의하에 날짜를 변경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가.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준비 및 운영으로 회의가 필요한 경우
 - 나. 시설 운영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논의사항이 발생될 경우
 - 다. 위원 중 한명 이상이 임시회의를 요청하여 위원회의 임원들이 필요성을 동의 할 경우

제16조(의결) 본 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사항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에서 위원의 1/2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운영규정의 변경)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 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보상) 위원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위원회, 편그라운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상위 기관의 표창을 건의할 수 있으며, 편그라운드 내 다양한 활동 등에 참여 기회를 부여 할 수 있다.

2023년 (진건)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회칙으로 제정합니다.

2023.8.26.

센터장	김 효 진	김효진
위원장	조희영	조희영
부위원장	변진혁	변진혁
서기	김현진	김현진
행사기획분과장	이윤진	이윤진
미디어홍보분과장	차예슬	차예슬
대외협력분과장	김하늘	김하늘
위원	민규원	민규원
위원	허지후	허지후
위원	장민서	장민서
위원	박소은	박소은
위원	어진서	어진서
위원	전혜인	전혜인
위원	조수연	조수연
위원	하은지	하은지
위원	신하영	신하영
위원	이도운	이도운